중 재 신 청 서

1. 신청인

회사명: 주식회사 와드

주 소: 00시 00구 00로 00

대표자: 대표이사 홍OO 전 화: 010-XXXX-6521 이메일: gwj@naver.com

2. 피신청인

회사명: 주식회사 페이커 종합상사

주 소: 00시 00구 00로 00

대표자: 대표이사 이OO 전 화: 010-XXXX-1865 이메일: justin@naver.com

3.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약금의 2배인 금 145,376,000원 및 물품공급계약의 잔금인 금 31,152,000원과 핑크와드로 부터의 물품구매비 금 40,000,000원과 정신적 손해배상 금 50,000,000원 총 금 266,528,000원을 청구한다.
-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4. 신청이유

- (1) 신청인, 주식회사 와드는 육군 바위게 부대에게 '열영상감시장비 및 CCTV시스템' 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계약서 참조).
- (2) 신청인은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 상 선금 70% 금 72,688,000원(2018. 6.15.자)을 지급받았고 잔금 30% 금 31,152,000원을 물품검수 완료 후 지급받기로 하였고, 합계 금 103,840,000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신청인은 2018. 8. 14.경 계약을 해지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외 ' 주식회사 아트록스'에게 새로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납품을 완료하였습니다.

- (3) 신청인은 장비 성능에 대해 군부대 및 피신청인에게 계약 후 즉시 수차례 물어보 았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응답이 지연되어 8월 7일 자로 응답해주었고 그 내용이 해당 부대의 요구사항이 아닌 타 부대 기준으로 8-14um(마이크로미터)라 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자료를 보내줌으로서 제품기준의 모호함을 야기하고 제품 설계 및 생산을 지연시킴으로서 계약상의 공급기간인 8월 15일까지 물품공급의 어려움을 발생시켰다.
- (4) 신청인은 물품공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8월 7일 즉시 자체적으로 물품의 설계 및 제조에 들어갔지만 7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품질 및 수량을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안으로 요구 기준에 맞는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실내가전제품으로 유명한 중국의 핑크와드가 제작한 제품들을 자비로 40,000,000원에 급하게 구매할수밖에 없었고, 8월 13일 검수에서 KC인증, CE인증 등의 미비로 1차 불합격했습니다.
- (5) 그러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약금의 2배인 금 145,376,000원 및 물품공급계약의 잔금인 금 31,152,000원과 핑크와드로부터의 물품구매비 금 40,000,000원과 정신적 손해배상 금 50,000,000원 총 금 266,528,000원을 청구하기 위해 귀원에 중재를 신청합니다.

5.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2. 갑 제2호증

계약서

민법 및 상법

20XX년 XX월 XX일

위 신청인 홍 OO 인

대한상사중재원 귀중

물품매매계약서

□ 구매자	(갑) :	주식회사	페이커	종합상사
-------	-------	------	-----	------

□ 판매자 (을) : 주식회사 와드

□ 약정물품명 : 육군 바위게 부대 열영상감시장비 및 CCTV시스템 구매

□ 단가 : 금 103,840,000원 (부가세 포함)

□ 납기일 : 2018년 8월 14일

□ 선금 : 계약체결 후 70% 납입, 금 72,688,000원

□ 잔금 : 물품검수 완료 후 30% 납입, 금 31,152,000원

※추가약정사항

- 입찰공고번호 20180500-00호 건으로 구매자(갑)은 주식회사 페이커 종합상 사로, 판매자(을)은 주식회사 와드로 한다.

- 납품사양: 나라장터 입찰공고 규격서(입찰공고번호 20180500-00호) 및 납품 조건을 우선으로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시 상대방에게 즉시 전달한다.
- 위 계약은 납품 및 설치기준이며, 잔금은 수요기관 납품완료 후 검수 후 지체 없이 갑은 을에게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물품보증기간 및 하자보증 관련사항은 갑의 수요기관과의 계약 내용에 따른다.

"갑"과 "을"은 합의에 따라 본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기본약정사항 1부

2018년 6월 15일

갑 : 주식회사 페이커 종합상사 을 : 주식회사 와드

주소 00시 00구 00로 00 주소 00시 00구 00로 00

성명 대표이사 000(인) 성명 대표이사 000(인)

기본 약정 사항

- 제1조 갑과 을은 물품공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신의에 따라 성 실히 협조하며, 위 계약은 갑과 을의 서명날인 시점부터 효력을 발휘한 다.(대리인 서명포함)
- 제2조 양 사 위약 계약해지 시 계약금액의 2배를 위약벌로 각각에게 배상한다.
- 제3조 납기 지체상금은 1일 지체시 갑의 기관계약 총액의 1.5/1000으로 하며 잔 금과 상계한다.
- 제4조 납품하자시 (30일 이상 납기지체 혹은 수요기관 검사/검수미달로 인한 납품 이행 불가 등) 을의 책임에 의한 자동계약해제(해지)로 간주한다.
- 제5조 갑(갑의 납품처 포함)의 검사 불합격시 을은 재납품하여야 한다.
- 제6조 기관과의 계약금액 변경시 갑과 을은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 제7조 을의 과실로 인한 갑(갑의 고객사 포함)의 2차 손해 발생시 위 2항의 위 약벌 이외에 갑이 입은 모든 피해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추가손해배상을 한다.
- 제8조 수요기관의 일방적인 공고취소 및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갑과 수요 기관의 계약해지 발생시 본 계약은 무효가 되며 기본약정사항 2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제9조 계약의 이행상 상호 이견이 발생할시 협의를 우선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해 해결한다. (단, 공급물품의 품질 및 성능에 관한 분쟁 발생시 해당공고의 시방서 및 고고기관의 의견을 따른다)
- 제10조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민법과 상법을 준용한다.

갑 제1호증

상법

제68조(확정기매매의 해제)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 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 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 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111조 1항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제461조(변제제공의 효과)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제502조(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 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갑 제 2호증